# 국제교류 학생규정

2014. 01. 01. 최초제정

2016. 11. 01. 부분개정

2017. 10. 01. 부분개정

2021. 05. 01. 부분개정

2022. 05. 01. 부분개정

2024. 05. 01. 부분개정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, 본 대학교 학생의 해외파견 및 외국대학생의 본 대학교에서의 수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국제교류학생"이라 함은 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대학과 상호 교류하는 모든 학생을 지칭한다.
- 2. "교환학생(exchange student)"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이 체결한 학술교류협 정에 의거하여 강의수강 및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학생을 말한다.
- 3. "복수학위학생(dual degree student)"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이 체결한 학술 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본교 및 외국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받아 양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각 대학의 명의로 각각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학생을 말한다.
- 4. "기타 연수생"이라 함은 동조 2호 내지 3호 이외에 본 대학교가 교육 및 연수의 목적으로 외국대학과 교류하는 국제교류학생을 지칭한다.
- 5. "해외학점인정학생"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선발하는 경우 이외에 한국정부나 지자체시행 프로그램의 어학과정에 참가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을 지칭한다.
- 6. 이 규정에서 말하는"학기"는 별도의 부가설명이 없는 한 본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- 7. "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"이라 함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16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학생을 말한다.<신설 2016.11.01.>

**제3조(업무의 관장)** 국제교류학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부서에서 에서 주관한다.<개정 2016.11.01., 2022.05.01.>

## 제2장 본 대학교 국제교류학생의 파견

제4조(지원자격) 해외교류대학에 국제교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

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파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본 대학에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매 학기당 최소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
- 2.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평점 평균이 2.00 이상인 자(4.50 기준)
- 3. 해외 교류대학이 지원자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요구 기준에 적합한 자
- 4.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, 학과장의 추천으로 평점을 대신한다.
- 5.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(16주)의 신청자격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선발절차 또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 <신 설 2016.11.01.>
- **제5조(교환학생의 신청방법)** ①교환학생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세부요강과 일정은 사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.
- ②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본 대학교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국제교류학생지원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2. 소속 학과 학과장 추천서(별지 제6호 서식) 1부
- 3. 성적증명서 1부
- 4. 재학증명서 1부
- 5. 등록금 납입 증명서 각 1부
- 6. 기타 필요서류
- 제6조(교환학생의 선발절차) ①교류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한다.<개정 2016.11.01., 2022.05.01.>
- ②국제업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된 후보자는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교환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. <개정 2022.05.01.>
- 제7조(교환학생의 선발기준) 교환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적격자로 선정한다.(단,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초과되지 않을 경우 적격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.)
  - 1. 학과단위로 파견제를 시행하는 학과의 재학생은 학과단위 파견시기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. 다만 학과단위로 파견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타 학과의 지원자와 함께 아래 각 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발한다.
  - 2. 교환학생의 선발은 면접과 학과성적(평점평균)으로 선발한다.
  - 가. 면접 100점(별도의 외국어 능력시험 포함)
  - 나. 학과 성적(평균평점) 100점
- 제8조(복수학위학생의 선발) 복수학위학생의 자격기준 및 선발은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, 각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.

제9조(기타 연수생의 선발) 기타 연수생의 자격기준 및 선발은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, 각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내용에 따라 주무부서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.<개정 2024.05.01.>

제10조(해외학점인정학생의 신청) ①해외학점인정학생은 해당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국제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외국대학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6.11.01., 2022.05.01.>

- 1. 국제교류학생지원서 [별지 제1호 서식]
- 2.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
- 3. 해당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(필요시)
- 4. 기타 필요서류
- ②해외학점인정학생은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를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수학기간) ①본 대학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기간은 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교류대학과의 협정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
- ②복수학위학생의 외국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조 1항에 정한 제한연한을 초과하여 외국대학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모든 학생은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학생 프로그램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참가 할 수 있다. 다만, 여석이 발생하거나 경쟁선발이 아닌 기타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복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
- 제12조(등록 및 수업연한 등) ①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제교류학생은 파견기간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계절학기에 파견하는 경우 본 대학교의 계절학기 학점부여 기준에 따른다.
- ②국제교류학생이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정규 등록하는 학기는 본 대학교 학칙에 정한 수업연한에 포함하여 인정한다.
- ③국제교류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.
- ④본 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제교류학생은 복수학위학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졸업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다. 다만, 본인이 졸업학기에 파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졸업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파견이 끝난 후 1개 학기 이상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.
- ⑤해외 교류대학에서의 수강신청은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- ⑥국제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조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 매학기 등록기간과 관계없 이 조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.
- ⑦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해외 파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교류대학에서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<신설 2021.05.01.>
- 제13조(귀국보고 및 변경신청) ①수학허가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하며, 귀국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소정의 귀국보고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 학과장은 이를 국제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11.01.,

#### 2022.05.01.>

②사전에 허가받은 외국대학 수학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제교류학 생변경원[별지 제4호 서식]을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제14조(제경비 등) ①모든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생활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학생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파견기간동안 수학하는 대학의 수업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.
- ③외국대학과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상호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의 경우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규정을 따른다. <신설 2016.11.01.>

#### 제3장 외국대학 학생의 수학

- 제15조(외국대학 교환학생의 수학허가) ①외국대학 교환학생의 수학허가에 대해 국제업 무위원회의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05.01.>
- ②국제업무위원회에서는 외국대학생의 수학학기와 소속학과 및 수학기간 등 제반사항을 결정한다.<개정 2022.05.01.>
- 제16조(외국대학생의 수학기간) 외국대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기간은 외국대학과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라 결정한다.
- **제17조(과목의 이수 등)** ①외국대학생은 본 대학교와 소속대학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정한다.
- ②필요한 경우 외국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할 수 있다.
- 제18조(외국대학생의 관리 등) ①소속 학과에서는 외국대학생에게 지도교수를 지정해 주어 수강신청 등 제반 학사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외국대학생은 지정된 수학기간 동안 본 대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, 관련부서에서는 주거의 제공 등 외국대학생의 생활편의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한다.

#### 제4장 국제교류 학생의 학점인정

- 제19조(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) ①외국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제교류학생은 수학 대학 학기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외국대학취득학점인정건의서 [별지 제5호 서식]
  - 2. 외국대학의 성적증명서(영문 증명서 포함)
- ②해당 학과에서는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국제업무 주무부서를 경유하여 교무처(교무팀)에 제출한다.<개정 2016.11.01., 2022.05.01.>
- ③교무처에서는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칙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, 의견을 첨부하여 국제업무 주무부서를 경유, 학과에 반송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

있다.<개정 2016.11.01., 2022.05.01.>

제20조(학점인정 심의 기준) ①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본 대학교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으로 일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수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3항에 따른다. 또한 선택과목의 경우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학과 회의를 통하여 그대로 학적부에 기재할 수 있다.

- ②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종별은 본 대학의 전공 및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국시과목 및 교직과목으로의 인정은 불허한다.
- ③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친 후 대체 인정한다.
- ④교과목별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 대학교와 학점체계가 다른 경우 교무처, 국제업무 주무부서 및 해당 학(과)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6.11.01., 2022.05.01.>
- ⑤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Pass, D이상,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Pass로 인정한다.
- ⑥복수학위학생은 소속(학)과의 허락을 받아 파견 전에 졸업과제를 지정하여 졸업논문 ·졸업시험 등의 졸업요건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.
- ⑦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각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은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학기 당 20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⑧외국대학(부설 어학기관 포함)에서 이수한 어학과정은 수업시간 15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⑨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국제교류학생에게는 학칙 제36조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⑩학과장은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를(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)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제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한다.(단,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)
- ①국제교류학생이 해외 교류대학에서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평가결과가 학칙 제46조에서 규정한 점수에 미달될 경우, 학칙시행세칙 제50조 학점 불인정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.
- ②교류대학에서 파견기간이 만료된 직후 학기에 본 대학에 복귀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, 국제교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.
- ③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외국대학 이외의 사설기관에서 어학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심의하여 학점인정 할 수 있다.
- ④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(16주) 사업은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해 학기의 중간평가, 종합평가, 수시평가 중 하나를 반드시 치르고, 당해학기 성적은 해당시험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 단, 평가를 대신하는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1.01.>,<개정 2017.10.01., 2022.05.01.>

#### 제5장 국제교류 학생의 준수사항

제21조(준수사항) 국제교류학생으로 수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국가와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- 2. 국제교류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- 3. 출·입국 및 해외체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.
- 4.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대학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교류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하고 지불한 장학금을 회수한다.
- 5. 중도에 수학을 포기하거나, 기간 종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 또는 귀국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6.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 및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### 제6장 보칙

제2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국제교류학생 관련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반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 [별지 제1호 서식]

	국제교	) 르 :	하셔	$\mathbf{H} \mathbf{T}$	T 워	H				결	담	당	센터장	처	장		
		- 77	一 ·	<b>&gt;</b>	ت ۱	. / \				재							
구 분	□교환학성	ᅢ □복	수학	위학생	せ ロフ	I타연	수생:	_		□ō	∦외章	학점인	정학생				
성 명	(한글)						주민	등록	릒번호								
* 영문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	(한문)		E-	-ma	il												
중절에게 작성	(영문)						학번(학년)					(학년)					
소 속		[	대학				학과	+									
주 소																	
전 화 번 호							휴대	전호	·번호								
군필 여부	□ 유		무				여권:	소지	[] 여 두	<u> </u>	* 5	] 유 유효기(	무 깔: 년	! 월끼	가지		
이 수 학 기	정규학기	l 총 _		학기 C	기수		재 2	덕 성	상 태			재흐	남중 □	휴학	중		
총취득학점			학점				평 점	덜፱	명 균				/ 4.5	50			
졸업예정일		년	월	졸업(	계정		편 6	길 (	여 부			신인	ļ학 □ 판	변입호	F 1		
		Д		험	명					성	적		응시	일자			
외국어성적																	
희망수학대학									ġ	<u></u> 학과(	 ト(전공)						
수학대학주소										1-1		<u>,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u>					
희망수학기간		 년	월	일	~	년	월		일 (등	 총	개	월,	 개 학	기)			
	성 명									지원		의 곤	·계				
보호자	주 소											전 화					
	직장명				즈	! 위						전	화				
수학하는 동 활태도로 학 안 발생하는 붙임: 1. 해당 2. 입학	업에 열중함 제반사고에 외국어 능력시 허가서(해당자	학칙 및 할 것고 대하( <sup>험 성적</sup> 만)	제 7 사 외크 계 학 <sup>교</sup> 표(해명	구정을 국대학 교에	준수 수학 책임을	하고 :에 2	대전! 산요되	보건 I는	!대학 모든	교 후	남생신 용을	l분에 부담	맞는 언형 하고 파견	행과 기간	생		
	학생 수학계획 구비서류	서(해당	자만)							1:	-1	0					
										5	<u> </u>	월	일				
						지원	자		성	명 :			(인)				
						보호.	자		성	명 :			(인)				
												경 -	학고	장			
대전보건대	학교 총징	구호	ŀ									유					

# [별지 제2호 서식]

	국자	레교류	학생	수학기	ᅨ획서		
성 명				학번(학년	!)	(	학년)
소 속		학과			'		
수학희망대학					학과		
수학희망기간	년 물	월 ~ 년	월 <총	개월>	제출일자		

## [별지 제3호 서식]

[ 글기 게 0조	בן דו								
국제교류학생 귀국보고서									
구 분	□교환학생 □복수학위학생 □기타연수생: □해외학점인정학생								
성 명	학 번 ( 학년) ( 학년)								
소 속	학과								
주 소									
전 화	휴대전화번호								
E-mail									
수학대학	학과								
수학기간	년 월 일~ 년 월 일(총 개월, 개학기)								
붙임 : 1. 교횐	국제교류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같이 보고합니다. 한학생체험기(해당자만) 1부 다 첨부서류 년 월 일 신고인 : (인)								
대전보건(	대학교 총장 귀하								

## ※ 국제교류학생체험기 작성방법

본 체험기는 앞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위한 안내 자료로 사용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.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참가자가 반드시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제한없이 자세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인적사항(성명, 학번, 전공, 연락처 등)
- 2. 수학내용(수학대학명, 학과(전공)명, 수학기간 등)
- 3. 출입국관련 유의사항(비자취득, 항공권구입, 짐송부방법, 환전, 출입국신고, 외국인 등록 등)
- 4. 교통(공항에서 학교까지의 교통편, 요금, 소요시간, 학교에서 주요장소로의 교통, 시내교통 등)
- 5. 학교안내(수학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, 본 대학교대비 학제상의 상이점, 학교규모 및 시설, 면학분위기 등)
- 6. 환경(위치, 주변환경, 기후 등)
- 7. 숙소(기숙사시설, 비용, 이용규칙, 분위기, 유의사항, Homestay 이용현황 등)
- 8. 음식(학교식당 이용현황, 학교주변 식당현황, 가격 등)
- 9.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제도 (교환학생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연락처, 지도교수, Counseling, 제공시설 등)
- 10. 수업(수업방법, 교수, 과제, 평가, 수업준비 등)
- 11. 대인관계(교우관계, 지역사회 등)
- 12. 수업외 활동(교내활동, 교외활동)
- 13. 소요경비(현지물가, 항공료, 숙박비, 식비, 도서비, 공공요금, 총소요경비 등)
- 14. 관광, 여행
- 15. 출국전 준비해야할 사항(반드시 소지해야할 것 등)
- 16. 귀국준비시 유의사항
- 17. 건의사항
- 18. 차기 교환학생을 위한 제언
- 19. 어학연수에 대한 소감 및 평가
- 20. 기타
- 21. 사진첨부(현지생활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)
- 22. 외국대학 안내자료 첨부(과목개요, 대학안내 등)

# [별지 제4호 서식]

	결	담	당	티	장	처	장					
<b>二</b>	제교류학	갱	먼겅원		재							
구 분	□교환학생 □복	생:	□해외학점인정학생									
	(한글)	주단	민등록변	번호								
성명* 영문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	(한문)				E-mail							
중절에게 작성	(영문)			항	학번(학년) ( 호						크)	
소 속	ζ	학과										
주 소												
전 화 번 호				휴[	내전화변	번호						
변경시항	□포기 □대학병	변경 [	□과정변경 □기2	·변경 [	□기타	사항	:					
20/10		변 경	병 전				변	경 흑	5			
수학대학												
수학과정												
수학기간												
변경사유 및 기타사항				'								
	성 명					지원자	와의	관계				
대리인 *	주 소								·			
연락처	자택전화				휴다	전화						
	직장명				E-r	nail						
변경하고 붙임 : 1. 입학	자 신청합니다. <sup>허가서(해당자만)</sup>	ᇽᆒ교ᅧ	류학생으로서 사전	년에 허.	가받은	사항	을 위	와 같	01			
2. 기타	구비서류					년		월	잍	Ī		
			지원지	ł	성민	∄ :			(인	)		
							 경		학	과장		
대전보건대	학교 총장 귀	하					유					

<sup>\*</sup> 대리인은 지원자 본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에서 서류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람을 말함.

# [별지 제5호 서식]

	외국대학 취득학점인정 건의서											
-	구 분		□교환학생 □복수학위	학생	미기	<b>라연수</b> 상	J:		□해외흑	<b>∤점인정</b> 章	학생	
ļ	4 6	<b>†</b>					학번	(학년	)		(	학년)
			학과									
	! 화 번 :							mail				
	학대학교		14 01	01		1 -		학과 	<del></del>	11 01	711	=1.71.\
Î	학기	기 간 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기 외국대학 취득 사항 본교 학점인								개	악기)	
		-	피국내목 커 <b>극 사</b> 용						485	3 118		
연 번	이수 학기		실제 취득 과목명 학 성 종 점 적 별 1)									
1	_											
2	-											
3	_											
4	-											
5	-											
6	-											
7	-											
8	-											
계	ŧ	총 _	과목 이수학	점 취	득			총 _	과목 _	학점	인 :	정
ō	본인은 국제교류학생규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을 청원합니다. <u>청원인 성명: (인)</u> (년월일)											
Olle	신청자의 학점인정 청원에 대하여 학과 교수회의 결과 위와 같이 취득과목·학점·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합니다. <u>소속 학과장 : (인)</u> ( 년 월 일)											
	※ 붙임		. 성적증명서 원본(영문) . 과목개요서 및 성적평가 체	계						경 .		국제업무 - 무부서장
대	전보건(	개호	학교 교무처장 귀하							೧೯		

- 1) 종별 : 01 교양필수, 02 교양선택, 05 전공필수, 06 전공선택, 09 일반선택,
- 2) \_\_\_\_란에는 본교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만 대체과목명을 기재하십시오.

[별지 제6호 서식]

# 국제교류학생 추천서

□교환학생 □복수학위학생 □기타연수생: \_\_\_\_ □해외학점인정학생

학 과 :		
학 년 :		
학 번 :		
성 명 :		
(주의사항 및 지원자 의무 확인사항)		
등록여부 :		
전공학점 인정 가능여부 :		
입국 관련 본인 책임 :		
위 학생은 전공 수학 및 언어 능력과 기	<u> </u> 사질의 평가	결과 국제교류학생 주
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지원 자격에 기	결격사유가	없으며, 국제교류학생
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	1 판단되어	교환학생으로 추천합
니다.		
20○○ 년 월	] 일	
	학과장	: (인)

대전보건대학교총장 귀하

첨부서류 : 국제교류학생지원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,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